

인도의 보다폰 소급과세 움직임과 대응방안



CONTENTS

목 차

요 약 / 1

I. 인도 보다폰 과세를 위한 소급과세 입법의 추진개요 / 2

- | | |
|---|------------------------------------|
| 2 | 1. 인도 과세당국의 보다폰 과세 개요 |
| 6 | 2.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소급과세를 추진하는 이유와 배경 |
| 8 | 3. 인도가 그간 추진한 소급과세의 사례 |
| 9 | 4. 인도가 추진하려는 GAAR의 내용과 파장 |

II. 보다폰 과세사례에 대한 국내외의 반발과 경제 파급효과 / 12

- | | |
|----|---------------------------|
| 12 | 1. 인도 재계의 반발 움직임 |
| 13 | 2. 인도 진출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발 움직임 |
| 15 | 3. 현지 여론 및 해외언론 동향 |
| 16 | 4. 보다폰 논쟁이 인도 경제에 미친 영향 |

III. 한국 투자진출기업의 대응방안 / 18

- | | |
|----|------------------------|
| 18 | 1. 인도 진출기업의 파급효과 |
| 18 | 2. 우리 진출기업의 대응방안 및 시사점 |

요 약

최근 인도 세무당국이 GAAR(일반적 조세회피 방지 법안)을 도입하고 1962년 4월까지 자본이득에 대해 소급해 과세하기로 발표하면서 인도 내외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인도 세무당국이 이처럼 공격적인 조치를 취하는 주요 이유는 보다폰의 허치슨에사르 인수건에 대해서 과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 세무당국은 보다폰이 자국내 4위의 통신업체를 2007년 인수하면서 해외거래를 통해 조세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간주했다. ‘형식보다 실질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가진 인도 세무당국은 보다폰에 22억 달러의 자본이득세를 부과하였고, 보다폰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전이 시작되었다. 인도 정부가 이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자 GAAR(일반적 조세회피 방지 법안)과 소급과세 원칙을 들고 나온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을 소급과세라는 방법으로 뒤집으려는 인도 세무당국의 시도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많은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결국 인도 정부가 GAAR의 시행을 1년 유예하기는 하였으나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인도 정부가 세수확보 및 조세정의 차원에서 향후 세무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도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GAAR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우리 기업에 대한 과급효과는 크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인도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 우리 진출기업들은 인도 정부의 정책방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중장기적 기회에 집중하여 인도에 대한 진출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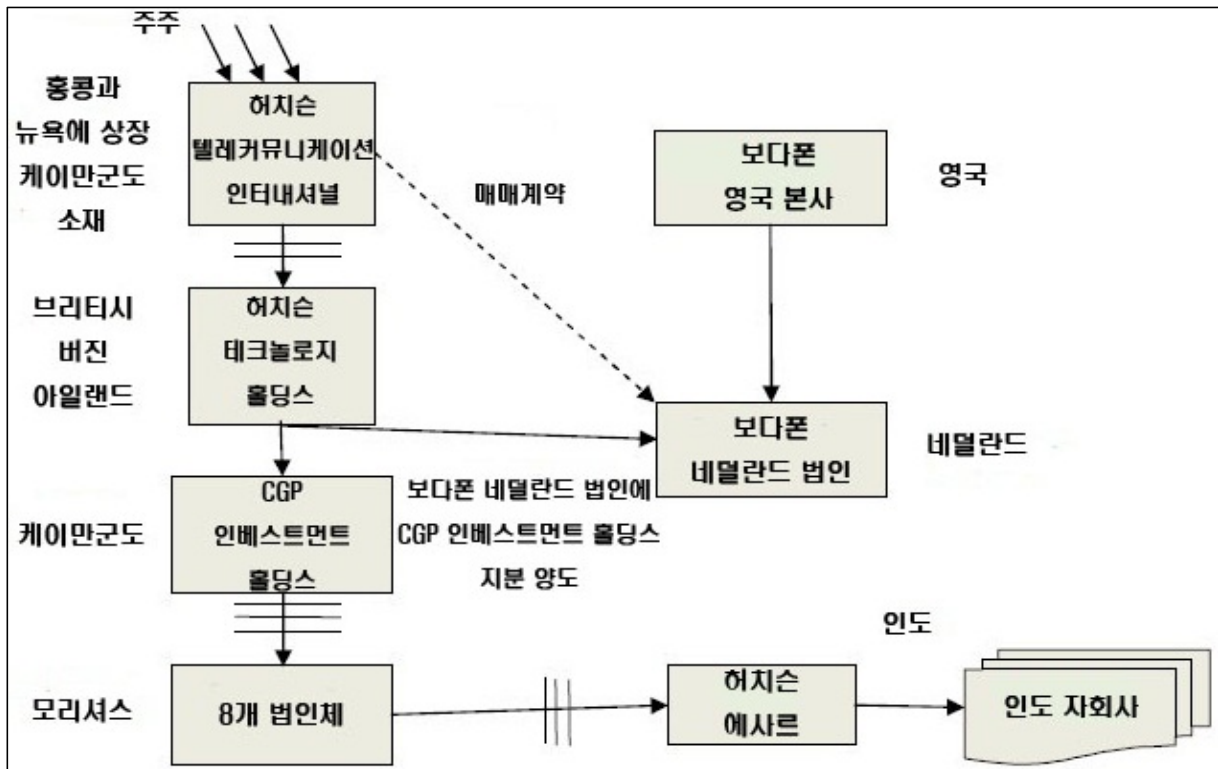
인도 보다폰 과세를 위한 소금과세 입법의 추진개요

1. 인도 과세당국의 보다폰 과세 개요

□ 보다폰, 허치슨 에사르 지분 67% 인수

- 영국 통신회사인 보다폰(Vodafone)은 2007년 홍콩 소재 허치슨 완포아 그룹(Hutchison Whampoa)과 에사르 그룹(Essar Group)의 합작회사인 인도 통신회사 허치슨 에사르(Hutchison Essar)의 지분 67%를 111억 달러에 인수
 - 부채포함 총 인수 규모는 188억 달러 수준
 - 보다폰은 허치슨 에사르를 손에 넣기 위해 초기 응찰 금액인 165억 달러 보다 20억 달러 가량 더 많은 금액을 제시
- 거래는 보다폰 네덜란드 지사와 홍콩 허치슨 간에 이루어진 것이며 면세지역인 케이먼군도에서 인수대금 지불
- 보다폰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인도 통신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당시 인도 4위였던 허치슨 에사르를 인수
 - 2006년 스위스콤에 벨기에 무선통신 회사인 프록시무스의 지분을 매각한 바 있는 보다폰은 허치슨 에사르 지분 매입으로 신흥시장 인도를 공략할 기반을 마련
 - 2006년 기준, 허치슨 에사르는 17%의 시장점유율을 확보하였으며, Bharti Airtel, Reliance Communications, BSNL과 함께 Big 4를 구성
 - 2006년 당시 인도의 무선통신 가입자 규모는 1억4000만명 수준이며 매월 600만명의 신규가입자가 발생

<영국 보다폰사의 인도 허치슨 에사르 M&A 구조>



자료원: Ernst & Young

<보다폰의 허치슨에사르 지분인수에 대한 입장>

□ 인도 과세당국 입장

- ‘형식보다 실질이 우선’되어야 하며, 케이먼군도에서 거래가 되었다 하더라도 허치슨에사르의 실질가치는 대부분 인도에 귀속되기 때문에 인도 자본소득세의 적용을 받아야 함

□ 보다폰 입장

- 보다폰의 네덜란드 자회사가 홍콩허치슨사의 해외자회사를 케이먼군도에서 인수한 것으로 인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음

□ 인도 정부와 보다폰간의 조세소송 경과

- 인도과세당국은 보다폰이 주식양도차익관련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보다폰에 22억달러의 자본이득세를 부과
- 보다폰은 이에 불복하여 뭄바이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
 - 보다폰은 인도 밖에서 해외업체간 성사된 인수합병(M&A)에 과세하는 것은 국제 세제관행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으나, 인도 뭄바이 고등법원은 인도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줌(2010년 9월)
 - 뭄바이 고등법원은 보다폰이 3년 전 이동통신업체 허치슨 에사르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생긴 자본소득에 대해, 자산이 인도에 있는 만큼 인도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
 - ※ 보다폰은 소송 기간을 줄이려고 과세 당국과 AAR¹⁾에 항소하는 과정을 피해 2007년 뭄바이 고등법원에 먼저 소송을 제기. 조세심판원과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가는 일반적 경로로 가면 분쟁 해결에 보통 10~15년이 소요되나, 보다폰은 그 기간을 5년 미만으로 단축
- 보다폰은 뭄바이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인도대법원에 상고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보다폰이 승소(2012년 1월)
 - 인도 대법원은 지난 1월 “보다폰의 인도 통신회사 지분 인수는 면세지역인 케이먼군도에서 이루어 졌으며 외국 회사 간에 이뤄진 거래 행위이기 때문에 인도 세무당국이 22억 달러의 세금과 벌금을 소급해 적용하지 못한다”고 판결
 - 이로 인해 보다폰은 지난 4년간 끌어오던 자본이득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승리하였으며, 대법원은 소송 전 보다폰이 인도 세무당국에 납부한 약 5억 달러의 보증금과 연 4%에 해당하는 이자를 되돌려 주라고 인도 세무당국에 명령함

1) Authority for Advance Ruling

<인도 대법원 판결(2012.1월)의 의의>

- 인도 대법원의 판결요지는 『보다폰은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납부(원천징수) 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의를 지님
 - ① 거래형식존중
 - 조세포탈 목적으로 거래구조를 허위로 꾸미거나 위법적인 구조를 취한 것이 아니라면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을 존중해야 함
 - ② 법인격존중
 - 독립된 법인의 법인격은 법인이 허위 또는 가장의 수단으로 설립된 경우에만 그 법인격이 부인될 수 있다고 판시
 - ③ 특수목적사 구성의 합법성
 - 국제거래에서 조세 중립적이고 투자자에 유리한 지역에 특수목적사(SPC)를 설립하여 이용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인정

□ 대법원판결을 우회하기 위한 인도정부의 대응

- 인도조세당국은 대법원판결을 우회하기 위해 자본이득에 대해 소급과세 할 수 있는 법안을 FY2012²⁾년 예산안에 포함
 - 현 소득세법이 1961년에 개정된 법안인 만큼, 1962년 4월 1일부로 소급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수정
- 인도의회가 이러한 세법개정안(Income Tax, Section 9)을 통과시키면 인도 조세당국은 해외에서 거래가 있었다라도 자본소득에 대해 소급 과세가 가능해짐
- 보다폰은 이번 과세조치가 투자협정 위반이라며, 국제중재를 비롯해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
 - 인도 대법원판결을 뒤집기 위해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이전 거래에 소급적용하는 것은 국제관례상 있을 수 없다는 입장

2) 인도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

2.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소급과세를 추진하는 이유와 배경

□ 소급과세법안의 추진경과

- FY2012년 예산안의 금융법 개정안(Finance Bill)중 GAAR³⁾(일반적 조세회피 방지 법안)이 포함되어 통과
 - 인도정부는 이에 대해, “법이 시행돼도 1962년까지 소급하지는 않고 6년 정도만 소급해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사실상 보다폰을 겨냥한 조치임을 시인한 것임
 - 보다폰은 성명을 통해 “인도 정부가 거래한 지 5년이 흐른 시점에서 세법을 개정해 다른 업체가 취한 이득에 대해 보다폰에 세금을 내도록 하려는 것은 완전히 불공평한 처사이며, 개정 세법을 검토해 주주이익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
 - 인도 정부는 국내외 반발이 거세지자 GAAR의 시행을 1년간 유예함
- 인도 정부가 발표한 대로 6년까지만 소급해도 보다폰 외에 GE, SAB 밀러, 크래프트푸드, AT&T, 사노피, 베단타 등의 기업들이 적용 대상에 포함됨
 - 인도 정부는 이번 GAAR정책이 시행될 경우 최소 80억 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과세권 확대와 조세정의 구현

- 인도 정부가 이처럼 단호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외국인투자자들의 편법 조세회피를 억제하여 조세정의를 구현하기 위함임
 - 인도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 중 조세회피를 위해 모리셔스를 통해 투자되는 금액이 전체의 27.2%에 달함

3) The General Anti Avoidance Rules

- 2012년 5월 8일 프라납 무커지(Pranab Mukherjee) 인도 재무부 장관은 인도 의회 연설에서 “인도인들은 외국인투자가 전혀 없었을 때도 살기위해 도마뱀을 잡아먹지 않았다. 12억 인구를 보유한 인도는 조세회피국인 케이먼군도, 버진아일랜드와 같이 외국인투자가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다.”라고 강조한바 있음

□ 재정적자 확대

- 보다폰 사례 및 유사 M&A거래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여 조세 수입을 늘리고 재정적자를 완화하는 것도 인도 정부의 목적임
 - FY2012년 예산안에 포함된 소비세와 서비스세 2% 인상조치의 세수증대 효과가 70억달러에 불과함을 감안할 때, GAAR시행을 통해 예상되는 80억달러 상당의 세수증대효과는 인도 조세당국이 포기하기 어려운 금액임
- 인도의 재정적자는 2014년 총선을 의식한 식품안보법안(Food Security Bill)등 선심용 정책의 추진으로 계속 악화되고 있음
 - 2011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GDP의 5.8%로 당초 목표로 했던 4.6%를 크게 벗어남

<인도 재정적자의 GDP대비 비중(연도별)>

FY2007	FY2008	FY2009	FY2010	FY2011	FY2012
2.6%	6.0%	6.4%	4.9%	5.8%	5.1%

자료원 : Planning Commission Annual Report, 현지언론 등 종합

주 : FY2012은 전망치

3. 인도가 그간 추진한 소급과세의 사례

□ 보다폰 사례 외 5건의 자본이득 관련 소송

○ GE - Genpact

- 미국의 GE는 인도 최대 BPO 기업인 Genpact의 지분 60%를 5억 달러에 미국의 사모투자전문회사인 General Atlantic and Oak Hill Partners에게 2004년 매각
- 양도는 해외에서 이루어졌으며, 현재 델리 고등법원에 계류 중

○ 미쓰이 - Vedanta

- 채광회사 Sesa 햄의 지분 51%를 영국 Vedanta그룹에게 2007년 4월 9.81억 달러에 매각 (현재 고아 고등법원에 계류 중)

○ IDEA CELLULAR - TATA

- 미국 통신업체 AT&T가 Idea Cellular 지분을 TATA 그룹에 매각한 경우로 보다폰 케이스와 유사함
- Tata 그룹은 AT&T의 모리셔스 자회사를 통해서 1.5억 달러에 Idea Cellular 지분 16.5%를 매입 (현재 인도 대법원에 계류 중)

○ SABMiller - Foster

- 영국 양조회사 SABMiller는 2006년 호주 Foster 인도 법인의 지분 100%를 매입함 (현재 푸네 고등법원에 계류 중)

○ Sanofi Aventis - Shantha Biotech

- 2009년 프랑스 제약회사인 Sanofi Aventis는 인도 Shantha Biotech 지분 다수를 7.7억 달러에 매입함
- 거래는 Merieux Alliance(Shantha Biotech 지분 90% 보유)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이루어짐 (현재 하이데라바드 고등법원에 계류 중)

4. 인도가 추진하려는 GAAR의 내용과 파장

□ GAAR 내용과 도입경과

- 인도의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 법안(GAAR)』은 탈세를 막기 위한 것으로 조세 피난처를 통한 투자를 포함해 수익 발생이 인도와 관계됐을 경우 모두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대상에는 내자, 외자의 구분이 없으며 해외에서의 거래도 포함
 - ※ 호주, 캐나다도 탈세 방지 목적으로 1980년대부터 GAAR을 도입한 바 있고 중국과 남아공의 경우는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이를 채택하였으나 운용 과정에서 해석상 어려움이 많아 광범위하게 적용하지 못함
- 더구나 인도정부의 GAAR은 적용 시점을 과거로 돌려 1962년부터 소급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기업들의 투자심리가 다소 위축되고 있는 상황
- 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대부분 조세회피처를 활용하지 않는 그린필드 형태의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음

□ 국내외 여론을 반영하여 GAAR 시행 1년 연기

- 2012년 5월 7일 인도 재무부는 국내외 압박을 수용, 『일반적 조세회피 방지 법안(GAAR)』의 시행을 1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안을 발표함
- GAAR가 도입되면 과세당국의 재량권이 크게 강화되기 때문에 인도 내외의 기업들은 크게 반발함
- 인도 세제개편의 핵심인 GST⁴⁾와 DTC⁵⁾도 도입이 몇 년간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GAAR이 내년에 시행될지의 여부도 불투명함

4) Goods and Service Tax (재화·서비스세)

5) Direct Tax Code (직접세 개편안)

< 5월 7일 개정된 GAAR내용과 영향 >

개정 내용	영향
○ 국세청의 과세평가가 이미 끝난 케이스는 소급적용대상에서 제외	○ 보다폰 케이스는 구제 대상에서 제외
○ 시행시기 1년 유예(2013년 4월 1일 시행) ○ 세금포탈 입증책임을 납세자와 세무당국 양자책임에서 세무당국 책임으로 일원화	○ 독소조항 일부 완화로 주식시장과 환율시장에 다소 긍정적 효과

자료원 : DNA India (2012. 5. 8.), The Economic Times (2012. 5. 8.)

- 세금포탈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세무당국 양자책임에서 인도 세무당국책임으로 일원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향후 납세자와 세무당국 간의 치열한 소송전이 예상됨
- GAAR에 여전히 소급적용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국내외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나, 재수정, 도입연기, 폐기 될 가능성도 있어서 GAAR이 실제로 내년에 시행될지는 미지수
 - ※ 인도는 법안의 입법 및 발표 시에 명확한 규정을 삽입하기 보다는 애매한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철저히 분석하기 보다는 일단 발표하고, 혼선이나 반발이 생기면 취소, 유예 혹은 재검토 등의 조치를 취하는 관행이 있음
- 한편 인도 정부는 GAAR 관련 사안들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확실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이를 통해 GAAR 적용에 대한 세부 지침 등을 제정할 예정
 - ※ 기업들은 자신들이 체결한 계약이 본 GAAR 에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Authority for Advance Ruling에 문의 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결론이 나오는데 1년 이상 소요되므로 사용사례가 많지는 않음

□ 인도 진출 기업, 조세회피처 활용 힘들어질 것

- 많은 외국기업들은 인도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조세회피처인 모리셔스를 통해 우회투자형태로 인도에 진출
 - 정상적인 금융투자자의 경우 단기차익에 대해 15%의 세금 납세를 해야 하는 반면, 모리셔스를 경유한 외국기업이나 투자자의 거래는 인도와 모리셔스 간 이중과세방지협정으로 조세의무가 면제됨
- GAAR이 소급 발효 될 시, 모리셔스를 단순 경유한 주식투자는 과세 대상에 포함될 예정
 - 외국에서 투자한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인도 비상장주식을 매각할 경우 장기 자본이득세로 이득의 20% 납부 의무가 발생
- 외국 기업들도 모리셔스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과실송금, 회계처리 등이 불가능해질 전망
 - 모리셔스 등의 조세회피처에서 '상당한(substantial) 상업활동'이 있음을 증명하면 여전히 조세의무가 면제됨
 - 그러나 법안에서 제시한 '상당한 수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외국인투자자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음

<모리셔스 국가개요>

위치	아프리카 동쪽 인도양 남서부	공용어	영어
면적	2040km ²	종교	힌두교(48%), 로마가톨릭(23.6%), 이슬람교 (16.6%)
수도	포트루이스	웹사이트	www.gov.mu
종족구성	인도계(68%), 크레올레족 (27%), 중국계 (3%)	통화	모리셔스 루피(Rupee)

II

보다폰 과세사례에 대한 국내외의 반발과 경제 파급 효과

1. 인도 재계의 반발 움직임

- 대부분의 인도 현지 기업들은 보다폰 과세사례에 대해 성명 발표나 공식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정부와 보다폰 간 진행 사항을 지켜보는 중이나 통신, S/W등 일부 업종의 경우는 정부의 과세정책을 신랄하게 비난
- GAAR의 도입 자체를 비난하기 보다는 소급적용 원칙에 대해 비난하는 경우가 대부분

<보다폰 소급과세 관련 인도 재계의 주요 비난내용>

주요인사명	언급내용
COAI ⁶⁾ , Rajan Matthews 회장	“네덜란드 정부가 보다폰 과세를 피하기 위해 인도 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는 중이며, 이는 향후 정치적 이슈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건은 필요이상으로 해결이 지연되고 있으며 인도 정부가 해야 할 최선의 방안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하루 빨리 내놓는 것이다.”
Mphasis, Jaithirth Rao 前회장	“보다폰 소급과세는 외국계기업을 노린 차별적 적용이며,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인도를 떠날지도 모른다.”
PWC India, Shyamal Mukherjee (Joint Tax Leader)	“소급적용 개념은 법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더라도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정부가 무리하게 소급적용하려는 것은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세수증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책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겠는가?”

6) Cellular Operators Association of India(인도 이동통신협회)

2. 인도 진출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발 움직임

□ 인도에 진출한 25만개 외국 기업, 인도 정부에 항의 서한 발송

- 2012년 3월, 인도 정부가 소급과세 방침을 발표하자 인도에 진출한 25만개 외국 기업은 소급적용 도입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인도 정부에 항의 서한을 발송
 - 만모한 싱 인도 총리와 고위 관료들에게 보낸 동 서한에서 외국 투자기업들은 '전례 없는 소급세 도입은 인도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라며 '외국 기업은 인도에 대한 투자를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
 - 이들은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수년전 케이스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이 예측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외국계 투자기업에 대한 비우호적인 정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함
-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 인도네시아가 보다폰과 비슷한 거래에 대처하기 위해 자국의 세법을 개정했지만 과거거래에까지 소급 적용하는 경우는 없었다는 점을 지적
- 이번 항의 서한 발송에는 인도 주재 외국 기업뿐 아니라 미국의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과 영국의 산업연맹, 일본의 대외무역위원회 등 7개 경제단체들도 동참
 - 인도 정부의 역행적 과세 방침이 외국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인도 투자환경을 어둡게 하는 것은 물론 다른 개도국 정부에도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
 - 과세 여부가 불투명해지면 회계 관점에서는 손익 시점을 판단하기 힘들어져 궁극적으로 사업 불확실성이 높아진다고 언급함

□ 영국 재무장관, 인도 방문 및 항의

- 영국의 조지 오스번(George Osborne) 재무장관은 4월 2일 프라납 무커지 인도 재무장관과 만난 뒤 기자회견에서 보다폰의 입장을 대변하며 '소급과세 방침은 외국 기업의 인도 투자를 전체적으로 저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
- 조지 오스번 재무장관은 인도재무장관과의 회동에서 소급적용으로 인해 외국투자자들이 신경과민 상태에 빠져있다면서 이의 재고를 요청함



자료원 : CNN IBN(좌), intl-mktg.us(우)

□ 인도 정부, 국제적인 비난에 한 발 물러서

- FY2012년 예산안 금융법안에 GAAR을 포함하여 국내외의 비난이 쏟아지자 인도 정부는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임
- 세금 부과의 회귀 시점을 당초 주장했던 1962년이 아니고 지난 6년간(2006년이후)이라고 정정
- GAAR 도입과 관련 국제조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발표함
- 인도 국내 정세와 국제적 여론, 외국기업들의 동향을 고려할 때 향후 GAAR을 도입하더라도 추가 수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3. 현지 여론 및 해외언론 동향

□ 보다폰 소급과세 사례에 대한 현지 여론

- The Times of India, The Economic Times등 주요 일간지는 보다폰 소급과세 사례에 대한 속보성 기사를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으며 인도정부와 보다폰의 추후 대응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
- Outlook, The Hindu등 일부 현지 매체들은 인도 정부를 옹호하는 칼럼을 써내고 있으며 인도 뭄바이 법원에서 내린 판결이 맞다는 의견도 보도되고 있음

□ 해외 언론 동향

- 해외 언론은 이번 FY2012년 예산안 금융법안에 GAAR이 포함되고 인도 정부 관계자에 의해 이번 조치가 보다폰을 겨냥한 보복성 결정임이 드러나자 인도의 투자 환경이 더욱 불안해졌다고 인도 정부의 결정에 난색을 표명
- 인도에 기진출한 25만개 외국기업과 7개 경제단체들의 항의 서한 발송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인도 정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음
 - ※ 외국 언론들은 인도 대법원이 보다폰에 대해 승소판결을 내렸을 때 이를 적극 환영한 바 있음
- 월스트리트저널(미), The Telegraph(영)등 주요 해외언론은 4월 1일 인도를 방문한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부 장관의 발언을 크게 보도함
- 조지 오스본 재무부 장관은 인도 방문시 “인도는 명확한 과세정책 방향을 내놓아야 한다. 현재의 과세정책을 유지한다면 인도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먹구름이 깔 것이다”라고 언급한 바 있음

4. 보다폰 논쟁이 인도 경제에 미친 영향

□ 외국 기업들의 우려 확산

- 국내외의 반발을 감안할 때, 인도 정부의 소급적용원칙이 추가적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나, 조세주권의 강화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외국투자기업 대상 세무강화조치는 지속될 전망
- 보다폰 논쟁을 포함한 최근 여러 건의 불투명하고 반기업적인 조치로, 인도 시장의 잠재력을 보고 장기 투자를 계획했던 외국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인도 정부의 최근 반기업적 정책 현황>

시행시기	정 책 조 치 내 용
2011년 11월	○ 소매유통시장 개방조치 2주 만에 철회 - 멀티 브랜드 소매업 지분 51% 허용 계획 취소
2012년 2월	○ 2008년 부여한 2세대 이동통신사업자 사업권 122개 취소 및 벌금 부과
2012년 3월	○ 면화 수출금지 조치 1주만에 철회 - 국내 면화가격이 급등하자 만모한 싱 총리가 개입해 해제
2012년 3월	○ 1962년 이후 인도 기업을 인수한 외국기업에 대해 과세하기 위한 세법 개정 발표

자료원 : 친디아저널 (포스코경영연구소, 2012.6), KOTRA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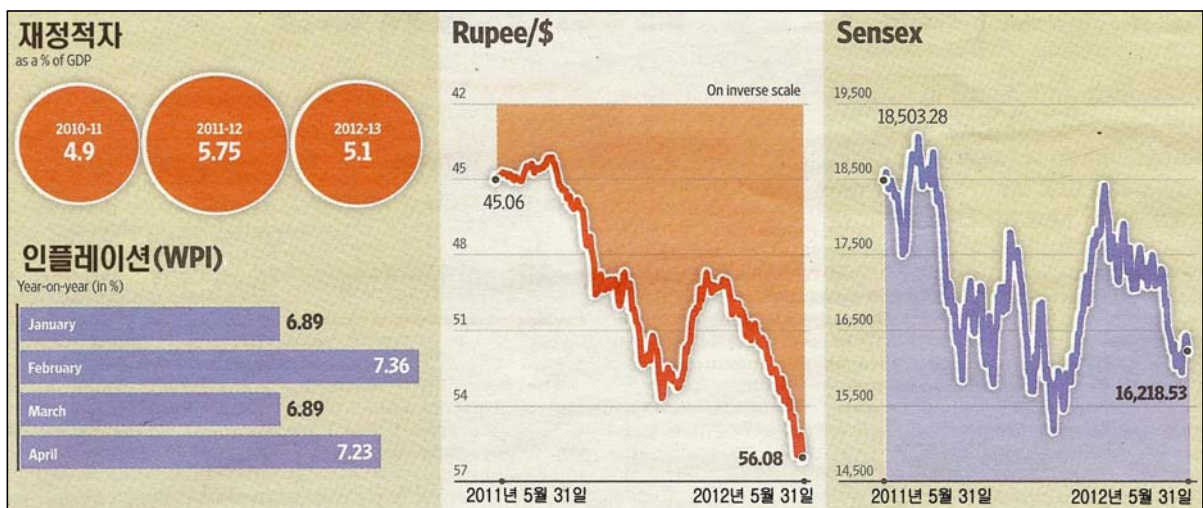
- Economist지는 이에 대해 ‘인도 정치권의 분열과 극심한 관료주의가 인도 경제성장의 동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⁷⁾하였으며, 많은 전문가가 인도에 보다 일관된 정책추진을 주문하고 있음

7) India's economy, Losing its magic(The Economist 2012.3)

□ 인도 리스크 부담 증가

- 최근 인도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보다폰 사태는 인도 경제의 또 다른 악재로 작용
- ※ 인도는 재정적자, 무역적자, 경상수지적자가 사상 최대에 달할 정도로 확대되고 있어, 루피화가 작년 8월 이래 22% 절하되고 경기침체와 사업 환경 불투명으로 인도기업들이 설비투자를 꺼리면서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있음
- ※ S&P와 피치는 각각 4월과 6월에 인도 신용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강등하였으며, 인도의 신용등급이 투자등급중 가장 낮은 수준인 BBB-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투기등급으로 강등 될 수 있음

<인도의 주요 거시지표 변화 동향>



자료원 : KOTRA Global Window

□ 외국인직접투자는 양호한 수준 유지

- 최근 인도 경제가 주춤하고 있긴 하지만 장기적인 잠재력은 여전하기 때문에 외국인직접투자는 양호한 수준을 유지
- ※ FY2011년 인도로 유입된 FDI는 468억 달러로 전년대비 34.5% 증가하였으며 특히 일본기업의 투자는 전년대비 90% 증가함

Ⅲ

한국 투자진출기업의 대응 방안

1. 인도 진출기업의 파급효과

□ 조세회피 불가로 인한 우회투자 방식 타격

- GAAR 도입이 원안대로 이루어질 경우, 현재까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던 조세 회피가 불가능해지며 이로 인해 우회투자 방식의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인도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역외 M&A거래도 위축될 전망
- 모리셔스 등 조세회피처를 통한 우회투자는 집중적인 과세조사 대상이 되기 쉽고, 이에 따라 우회를 통한 이득보다 따라오는 불이익이 더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 경로 설정을 신중히 검토해야 함

2. 우리 진출기업의 대응방안 및 시사점

□ 막연한 비관적 시각은 지양하고 중장기적 기회에 집중

- GAAR의 직접적인 대상은 이미 세금혜택을 받았거나, 조세회피 수단을 악용 혹은 남용한 기업이며 대부분의 우리기업과는 무관함
 - 우리기업은 주로 그린필드로 인도에 진출하고 있어서 GAAR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님
 - ※ 다만 본사·지사간의 거래 관계가 많으며 절세 기법이 발달한 대기업의 경우 과거 적용받은 세금혜택이 GAAR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막연히 인도진출에 대해 비관적은 시각을 갖기 보다는 인도가 가진 중장기적 기회에 집중하여 인도에 대한 진출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불명확한 인도 투자 환경 고려

- 인도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이 단시일 내 해소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고려하여 신규 투자 및 확장시 이러한 리스크를 반영해야 함
 - 인도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기업들의 단기 수익 중시, 세금회피 등과 같은 사안을 용인하지 않을 전망
 - ※ 지난 4월 1일 프라납 무커지 인도 재무장관은 ‘인도가 더 이상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조세회피처로 인식되는 것을 막겠다’고 공언
- 진출기업들은 인도 정부의 정책방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급변하는 투자환경에 대한 사전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조세문제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 필요

- 최근 인도과세당국의 공격적 조세정책과 조치는 현지 투자기업은 물론 우리 진출기업의 본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 ※ 인도는 외국투자기업의 모회사에 대해서도 이전가격과 고정사업장이슈를 통해 인도 내 과세권을 강화하고 있음
 - ※ 배당 및 자본거래, 제품수출입, 기술이전, 경영관리 등 모회사와 인도자회사간의 거래규모가 큰 기업들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
- 세무 및 회계 관련 이슈에 대한 전문가를 고용하여 향후 생길 수 있는 세무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

2012년 KOTRA 발간자료 목록

☐ GMR (Global Market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2-001	2012년 2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2.4
12-002	가속화되는 일본기업의 인도진출과 대응	2012.4
12-003	일본의 新고령세대, 새로운 시장을 연다	2012.4
12-004	포스트 카다피 리비아 파워 엘리트 100인	2012.4
12-005	푸틴 3기 러시아의 경제통상 정책 및 한러 경제관계 전망	2012.4
12-006	아시아 주요국의 임금동향과 시사점	2012.5
12-007	프랑스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 변화 및 동향	2012.5
12-008	중소기업 주력수출품목 시장변화 모니터링	2012.5
12-009	쿠바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한-쿠바 협력 방안	2012.5
12-010	CIS 주요국 경제협력 동향 및 유망 프로젝트	2012.6
12-011	방글라데시 소매 유통시장 현황 및 진출방안	2012.6
12-012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주요국 변화 동향	2012.6
12-013	인도의 보다폰 소급과세 움직임과 대응방안	2012.6

☐ GBR (Global Business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2-001	유럽 대형 유통망 조사	2012.1
12-002	유럽 재정위기 이후 시장구조 변화와 유망시장	2012.1

☐ GIR (Global Issue Report)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2-001	유럽한류와 국가브랜드 조사 보고서 -이탈리아, 헝가리, 독일, 프랑스, 영국 등 5개국 대학생들 중심으로-	2012.2

□ KEB (KOTRA Executive Brief)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2-001	2012년 1분기 KOTRA-SERI 수출선행지수	2012.2
12-002	대이란 추가제재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 방안	2012.2
12-004	미얀마의 민주화에 따른 우리기업의 진출방안	2012.3

□ KOTRA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2-001	러시아연방 경제산업개발 프로그램 - 2006 ~2015 러연방 체육 및 스포츠 발전 -	2012.1
12-002	해외 주요국 글로벌 인재 동향보고	2012.1
12-003	2012 글로벌 마켓 동향 및 진출 전략	2012.1
12-004	중남미 의료기기 시장동향	2012.1
12-005	한국 투자가이드	2012.1
12-006	Doing Business in Korea	2012.1
12-007	韓國投資指南	2012.1
12-008	韓國投資ガイド	2012.1
12-009	FDI 및 초국적기업 운영 통계에 대한 UNCTAD 훈련 교본 (UNCTAD Training Manual on Statistics for FDI and the Operation of TNCs)	2012.2
12-010	2011 외국인투자옴부즈만 연차보고서	2012.3
12-011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Annual Report 2011	2012.3
12-012	韓-美 FTA 발효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및 대응전략	2012.3
12-013	해외전력시장 진출 가이드 (2012년 개정증보판)	2012.4
12-014	중국 화상경제권 현황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2012.3
12-015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한 고용효과 분석	2012.4
12-016	Inward FDI 통계 선진국 벤치마킹 조사	2012.5
12-017	IT 기업 일본 시장 진출 내비게이터(Q&A집)	2012.5
12-018	2011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2012.5
12-019	블랙 다이아몬드를 잡아라 : 아프리카 주요국 유망상품 진출전략	2012.6

□ 설명회자료

번 호	제 목	발간일자
12-001	2012 KOTRA 해외공공조달포럼	2012.1
12-002	2012년 세계시장진출전략 설명회	2012.1
12-003	2012년 중국-중남미 포럼	2012.1
12-004	인도-인도네시아 포럼	2012.1
12-005	2012 러시아 포럼	2012.1
12-006	인도 전력인프라 네트워크 포럼	2012.2
12-007	한-미 FTA시대, 중소기업 새로운 길 열렸다	2012.2
12-008	위기 속의 유럽시장, 그래도 기회는 있다	2012.2
12-009	떠오르는 희망, 신흥시장을 선점하라	2012.2
12-010	한-CIS 비즈니스 포럼	2012.3
12-011	한-미 FTA 활용, 美 보안시장 진출전략 설명회	2012.3
12-012	2012 글로벌 에너지 플라자 연계 세미나	2012.5
12-013	Korea-Myanmar Economic Cooperation Forum 2012	2012.4
12-014	한국투자환경설명회	2012.4
12-015	[한중수교 20주년]한중 동반성장 고위포럼	2012.4
12-016	2012 글로벌 공항/철도기자재 조달플라자	2012.4
12-017	중국 투자환경 변화와 우리기업의 대응전략 설명회	2012.5
12-018	글로벌인재사업 심포지엄 2012	2012.5
12-019	Chemical Innovation with Korea	2012.5
12-020	중국 온라인 유통시장 100배 활용하기 세미나	2012.6
12-021	한미 FTA 대응 미국 지재권 전략 설명회	2012.5

작성자

◆ 뉴델리 무역관	김상환 차장
◆ 뭄바이 무역관	고영준 과장
◆ 신흥시장팀	박민준 과장

Global Market Report 12-013

인도의 보다폰 소급과세 움직임과 대응방안

발행인 | 오영호
편집인 | 배창헌
발행월 | 2012년 6월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우 137-749)
전화 | 02) 3460-7114(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Copyright © 2012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